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12.20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0년 11월 15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0년 11월 22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0.1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박정희)

가. 제안이유

-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을 지원하여 급식의 질 향상 도모 및 안전하고 체계적인 급식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고 무상급식을 통한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급식”, “무상급식”, “급식에 필요한 경비”, “식재료” 에 대한 용어정의(안 제2조)
- 지방자치단체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무상급식을 위한 협조(안 제3조)
-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등으로 규정(안 제4조)
- 지원방법으로 예산 또는 현물지원을 규정(안 제5조)

- 15명 이내의 “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안 제6조)
-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7조)
- 지원대상자의 친환경농산물 사용 및 지원금 정산의무(안 제8조)
-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지도·감독(안 제9조)
- 기타 시행규칙 및 준용사항(안 제10조~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 현 영)

- 이 조례안은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 의무이며 권리인 교육의 권리 중 의무교육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으로 평등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지원을 위한 「학교급식법」 제3조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우리구를 비롯한 서울시 18개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사항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치구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무상급식 계획, 재정지원 기준 등의 역할분담과 협조가 필요함
-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공동의 노력으로 가능한 사업이므로 이러한 기관과의 사업추진 여부와 방향에 따라 우리구 정책 여부와 방향도 결정될 사항으로 사료되며,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로 인하여 기존 교육지원 사업이나 복지사업 등을 폐지·축소하여 주민생활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심도 있는 충분한 토론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을 우리구의 현실적인 급식지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명과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함.

나. 주요골자

-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으로 한다.
- 안 제1조 중 “무상” 을 “학교 등” 으로 하고,
- 안 제2조 제2호 중 “무상급식”을 “급식지원” 으로 하며,
- 안 제3조 제1항 중 “무상급식에” 를 삭제하고,
- 안 제3조 제2항 중 “무상”을 삭제하며,
- 안 제5조 제2항 중 “사용하도록” 을 “우선 사용하도록” 으로 하고,
- 안 제6조의 제목 중 “친환경무상” 을 삭제하며,
- 안 제6조 제1항 중 “무상” 과 “친환경무상” 을 삭제하고,
- 안 제8조 제1항 중 “사용하여야” 를 “우선 사용하여야” 로 한다.

5.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 련 22 호 |
|----------|-------------|

제안년월일 : 2010. 12.

제 출 자 : 권영식 위원

1. 수정이유

- 본 조례안을 우리구의 현실적인 급식지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명과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함.

2. 주요골자

-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으로 한다.
- 안 제1조 중 “무상” 을 “학교 등” 으로 하고,
- 안 제2조 제2호 중 “무상급식”을 “급식지원” 으로 하며,
- 안 제3조 제1항 중 “무상급식에” 를 삭제하고,
- 안 제3조 제2항 중 “무상”을 삭제하며,
- 안 제5조 제2항 중 “사용하도록” 을 “우선 사용하도록” 으로 하고,
- 안 제6조의 제목 중 “친환경무상” 을 삭제하며,
- 안 제6조 제1항 중 “무상” 과 “친환경무상” 을 삭제하고,
- 안 제8조 제1항 중 “사용하여야” 를 “우선 사용하여야” 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 안 제1조 중 “무상”을 “학교 등”으로 하고,
- 안 제2조 제2호 중 “무상급식”을 “급식지원”으로 하며,
- 안 제3조 제1항 중 “무상급식에”를 삭제하고,
- 안 제3조 제2항 중 “무상”을 삭제하며,
- 안 제5조 제2항 중 “사용하도록”을 “우선 사용하도록”으로 하고,
- 안 제6조의 제목 중 “친환경무상”을 삭제하며,
- 안 제6조 제1항 중 “무상”과 “친환경무상”을 삭제하고,
- 안 제8조 제1항 중 “사용하여야”를 “우선 사용하여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나.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 다. 「축산법」, 「축산물 가공처리법」,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따른 무항생제 등급 이상으로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 라. 「식품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
- 마.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 (원양산을 포함한다)
- 바. 생산자 단체 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 사.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 4조제1항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 관리 기준에 따른 식재료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① 영등포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 1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에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급식계획과 재정지원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급식의 주체들과 협조하여 **무상급식을** 실현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2. 「유아교육법」 제 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 보육법」 제 10조에 의한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① -----

 -----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② -----

 ----- **급식을** -----.

제4조(지원대상) (조례안과 같음)

보육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급식을 위하여 예산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 2조제 4호의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급식지원 신청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무상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구청장
2. 영등포구 학교급식담당 국장
3.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 담당 국장
4. 영등포구의회 의원
5. 각급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의 장
6. 식품 또는 조리 전문가
7. 학부모단체 및 학부모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영등포구

제5조(지원방법) ① (조례안과 같음)

② -----

----- **우선 사용하도록** -----

③ (조례안과 같음)

제6조(급식심의위원회 설치)

① ----- **급식의** -----

----- **급식심의위원회** -----

② ~ ⑦ (조례안과 같음)

학교급식담당 국장,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구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급식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지급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 지급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20일까지 집행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 8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지급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서

제7조(급식지원센터 설치) (조례안과 같음)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

----- **우선 사용하여야** -----.

② (조례안과 같음)

제9조 ~ 제11조 (조례안과 같음)

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지도, 감독을 위탁할 수 있다.

제 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보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 22 호 |
|----------|--------|

제출연월일 : 2010.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성장기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을 지원하여 급식의 질 향상 도모 및 안전하고 체계적인 급식이 지원 될 수 있도록 하고 무상급식을 통한 무상교육을 실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조(목적)

-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을 장려하고, 성장기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무상급식 실현

나. 제2조(정의)

- 급식, 무상급식, 급식에 필요한 경비, 식재료 정의

다.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에 지원
- 국가, 서울시, 교육청의 계획과 재정지원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급식의 주체들과 협조하여 무상급식 실현

라. 제4조(지원대상)

-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마. 제5조(지원방법)

- 급식지원 신청, 지원체계 등은 규칙으로 정함

바. 제6조(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 설치)

- 무상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
-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부구청장
- 위 원 : 영등포구.남부교육지원청 급식담당 국장, 구의원, 외부위원 등
- 임 기 : 2년 단임

사. 제7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아.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구입에 사용, 집행정산서 제출

자. 제9조(지도·감독)

- 급식경비 집행적정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및 교육청 위탁 가능

차. 제10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카. 제11조(준용)

- 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준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3항
- 2) 학교급식법 제3조, 제8조, 제9조

나. 예산조치 : 2011년 예산편성 요구(1,800,000천원)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10. 11. 4 ~ 2010. 11. 9) 결과) : 의견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각급 학교 등에 대한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을 장려하고, 급식지원을 통해 성장기 학생 및 영·유아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과 무상급식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무상급식”이란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 학교 및 시설의 설립·경영자가 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에 필요한 경비”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우수 농산물
 - 나.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 다. 「축산법」, 「축산물 가공처리법」,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따른 무항생제 등급 이상으로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 라. 「식품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
 - 마. 「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 품질 인증품(원양산을 포함한다)
 - 바. 생산자 단체 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사.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식재료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에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국가 및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급식계획과 재정지원 기준 등을 감안하여 급식의 주체들과 협조하여 무상급식을 실현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 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급식을 위하여 예산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제4호의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급식에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급식지원 신청 및 지원체제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무상급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친환경무상급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구청장
2. 영등포구 학교급식담당 국장
3.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담당 국장
4. 영등포구의회 의원

5. 각급 학교 및 유치원, 보육시설의 장
 6. 식품 또는 조리 전문가
 7. 학부모단체 및 학부모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영등포구 학교급식담당 국장,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담당 국장으로 한다.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⑦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급식지원센터 설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지급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 지급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및 안전한 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20일까지 집행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지급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지도, 감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보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